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25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안상훈·안철수·임종득
이양수·배준영·고동진
이종욱·최은석·박덕흠
박성훈·정연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생애 말기 단계에서의 돌봄과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삶의 마무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9조의2(삶의 마무리 지원) ①</u>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삶을</u> <u>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u> <u>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u> <u>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조</u> <u>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u> <u>다.</u></p> <p><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u> <u>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u> <u>자가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할</u> <u>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u> <u>를 마련하여야 한다.</u></p>